

[1998. 12. 20]
[제82회 정기회]

1997년도 세입 · 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年度 歲入・歲出決算 審査報告書

1998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8년 8월 31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7년 12월 12일
- 라. 상정일자 : 제82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12. 14) 상정
제안설명, 결산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김 범 남)

○ 결산 총규모

세입예산액 873억 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0억 3,700만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937억 8,800만원에 대해 692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8억 2,900만원임.

○ 일반회계 결산

• 세입예산액은 705억 3,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5억 7,500만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806억 3,400만원에 대해 64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억 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 명시이월액 43억 4,100만원
- 사고이월액 17억 1,600만원
- 계속비이월액 44억 9,100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6억 700만원
- 순세계잉여금 56억 6,000만원

○ 특별회계 결산

• 의료보호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68억 5,50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214억 6,2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24억 8,200만원에 대하여 44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70억 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 명시 이월액 9억 6,700만원
- 계속비이월액 153억 5,900만원
- 순세계잉여금 6억 8,800만원임.

○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 9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7억 6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에 5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97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700만원임.
- 9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2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에 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97년도말 현재액은 4,400만원임.
- 9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8억 4,6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 6,5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9억 1,100만원임.

○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589억 1,500만원, 건물이 38억 6,700만원으로 총 2,628억원임.
- 9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2억 2,600만원임.

3. 결산검사결과 조치내역 보고요지 : 별첨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별첨2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1> 결산검사결과 조치내역 보고요지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검토자료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1	○'97년도의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타구에 비하여 높음.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이 계획 기간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대책 강구	○계속비 사업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서구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 기초공사 중으로 99년 10월경에 완공 예정이며, 폐기물종합 처리 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적립금의 활용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	기획감사실
2	○'97년도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 대비 세입결산 추계 오차는 '96년도 9.5%에서 '97년 21.4%로 상승세를 보임. 정확한 세수추계와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	○상무신도심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의 증가로 전국적인 보유토지에 의해 누진세를 적용받는 종합토지세가 96년 대비 27.1% 큰폭의 증가로 오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는 계획재정이 운영되도록 재정전망분석에 철저를 기하겠음.	기획감사실 지방세과
3	○'97년 일반회계의 이자수입률이 저조함. 구금고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함.	○구금고자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 세입·세출자금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예치자금을 최대화하고 보통예금(공금잔액)을 최소한도로 유지시키고자 노력 - 대기성(유휴)자금의 수익성과 유동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자금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음. - 또한, 당일 예치상품(양도성예금, 신종환매채, 표지어음)중 예치기간 및 수익율을 고려, 이자수입액이 가장 많은 상품에 예치시키고 있음. ※ '98. 8. 31. 현재 이자수입 1,463백만원 (세입대비 2.60%) ○ 보통예금(공금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각 실·과·소와 협의 필요한 자금만을 요구하고, 자금배정시 즉시 자금을 집행하는 협조관계 유지 ○ 자금수급관리는 당초 월별 자금수급계획에 의거 집행하도록 노력	지방세과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 이를 위해서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수추계,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착수시기, 공사진척에 따른 자금지출시기 등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 ○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자금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별도의 구금고 운영 자문단을 구성운영코자 하였으나, 위원회의 중복,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 문제 등이 도출됨. 따라서,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자금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금고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과
4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시세의 경우 연간 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시세의 평균 징수율 94.4%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	○최근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징수율이 감소함. ○각 세목담당자별로 월별·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한다는 자세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사전에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정확한 부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의 완벽한 징수에 노력 ○아울러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 병행 추진 ○부도법인 및 고액체납자 정리대책 - 부도법인 : 43개법인 3,296백만원 - 고액(300만원): 142명, 1,696백만원 ※ 고액·고질체납자 비중이 85%이상차지 - 정리 대책 · 전국재산조회 수시 실시(연5회) · 재산과약시 동기압류 신속실시 ·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실시 - 11월중 · 관허사업 제한(정지, 취소) -지속	지방세과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5	<p>○'97년도 시세 징수액은 541억원 24.7%이나 시에서 받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264억에 16.7%로 타 구에 비하여 가장 적은 실정임.</p> <p>특별교부금 교부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p>	<p>○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수요 발생시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자치구 지원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타 구 보다는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음.</p>	기획감사실
6	<p>○'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p>	<p>○ '98 하반기 체납액 정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목표액 : 1,000백만원 · 시 세 : 900백만원 · 구 세 : 100백만원 - 중점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 조기 채권확보 - 지속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지속 · 고질·고액체납자 형사고발 · 직장근무자 급여압류 추진 ·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실시 (300백만원 이상 전 체납자) ·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 전직원 책임징수 담당제 실시 	지방세과
7	<p>○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40%로 미수금에 대한 징수노력이 필요함.</p> <p>특별징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시 행동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요구됨.</p>	<p>○과태료는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며 부과 당시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별로써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주소추적과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질·고액체납자 인·허가 제한 → 인·허가 전산시스템의 활용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조기 채권 확보 · 주기적인 체납액 정리 보고회를 통한 담당자 독려 ·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제 실시 (세외수입 분야) → 직원사기 진작 ('99 예산 반영 계획) 	지방세과 건축과 교통과 (전 실적)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p>○ 건축물 과태료</p> <p>[채납액 현황]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840 519 1627 845"> <thead> <tr> <th>구 분</th> <th>징 수 결정액</th> <th>징 수 액</th> <th>채 납 액</th> <th>징수율</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370,659</td> <td>145,384</td> <td>225,275</td> <td>39.2</td> </tr> <tr> <td>97년도</td> <td>168,608</td> <td>78,855</td> <td>89,753</td> <td>46.8</td> </tr> <tr> <td>전년도</td> <td>202,051</td> <td>66,529</td> <td>135,522</td> <td>32.9</td> </tr> </tbody> </table> <p>[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처분 30건 119,369천원 -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채권조기 확보 - 다액 및 고질채납지에 대한 재산 압류 <p>○ 자동차보험과태료</p> <p>[채납액 징수현황] '98. 11.25 현재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829 1305 1627 1706">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채 납 액</th> <th colspan="2">징 수 액</th> <th rowspan="2">비 고 (감액)</th> </tr> <tr> <th>건 수</th> <th>금 액</th> <th>건 수</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5,351</td> <td>713,165</td> <td>699</td> <td>47,730</td> <td>39/11,130</td> </tr> <tr> <td>97년도</td> <td>1,898</td> <td>242,894</td> <td>369</td> <td>32,720</td> <td>26/7,536</td> </tr> <tr> <td>전년도</td> <td>3,453</td> <td>470,271</td> <td>330</td> <td>15,010</td> <td>13/3,594</td> </tr> </tbody> </table> <p>[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장 발송 :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수 : 5,261 건 - 금 액 : 666,210 천원 ○ 압 류 처 분 :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수 : 506 건 - 금 액 : 78,210 천원 <p>○ 자동차 과태료</p> <p>[채납액 징수현황] '98. 11. 28 현재 (단위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829 2359 1627 2611"> <thead> <tr> <th>구 분</th> <th>채 납 액</th> <th>징 수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97년도</td> <td>89,351</td> <td>19,621</td> <td></td> </tr> <tr> <td>전년도</td> <td>145,160</td> <td>2,55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징 수 결정액	징 수 액	채 납 액	징수율	계	370,659	145,384	225,275	39.2	97년도	168,608	78,855	89,753	46.8	전년도	202,051	66,529	135,522	32.9	구분	채 납 액		징 수 액		비 고 (감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351	713,165	699	47,730	39/11,130	97년도	1,898	242,894	369	32,720	26/7,536	전년도	3,453	470,271	330	15,010	13/3,594	구 분	채 납 액	징 수 액	비 고	97년도	89,351	19,621		전년도	145,160	2,550		
구 분	징 수 결정액	징 수 액	채 납 액	징수율																																																											
계	370,659	145,384	225,275	39.2																																																											
97년도	168,608	78,855	89,753	46.8																																																											
전년도	202,051	66,529	135,522	32.9																																																											
구분	채 납 액		징 수 액		비 고 (감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351	713,165	699	47,730	39/11,130																																																										
97년도	1,898	242,894	369	32,720	26/7,536																																																										
전년도	3,453	470,271	330	15,010	13/3,594																																																										
구 분	채 납 액	징 수 액	비 고																																																												
97년도	89,351	19,621																																																													
전년도	145,160	2,550																																																													

인건비 면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8	○'97 세출결산 사항을 보면 인건비 지출에서 서구의 경우 19.5%의 높은 지출을 하고 있어 인력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p>[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장 우송 :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수 : 412건 - 금 액 : 39,080천원 ○ 자동차 압류 :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수 : 645건 - 금 액 : 69,310천원 <p>○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 인력 감축과 인건비의 삭감·동결등으로 인건비는 대폭 감소 추세임.</p>	기획감사실
9	○재정총규모 대비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은 타 구에 비하여 낮음. 한해의 모든 수입은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각종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98, 3/4분기말 현재 지방채 원리금은 3,611백만원으로 타구에 비해 가장 적고, 상환이율은 30~55%인 저이율로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은 연도별 적립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있음.	기획감사실
10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정액보조단체는 그대로 지원하고 있으나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연간지급기준액의 19.9%인 5,635만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는 시민, 기타 사회단체도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지원육성 요망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액이 책정된 정액보조단체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20%를 삭감 지원하고 있음. ○임의단체는 관내에서 활동중인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단체의 활동상황, 타 구청에서의 지원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11	<p>○'97년도 폐기물센타조성 특별회계 불용액 1,708백만원 중 1,100백만원은 시비보조금 미수령액을 불용처리한 경우로 정리추경시 감액하지 않았음.</p> <p>○'97년도 세출결산서상 익년도 이월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결산상 일부 차이(322,000원)가 발생하고 있음.</p>	<p>○'97. 5. 22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1,100백만원이 교부내시되어 97년 1회 추경예산('97. 6. 30)에 편성하였으나, 정리추경('97. 12. 20, 3회)이 완료된 이후인 '97. 12. 30(시청소 67510-1304호)에 시비보조금 변경 교부내시되어 정리하지 못하였음.</p> <p>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적법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p> <p>○공동주택특별회계는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음.</p> <p>○양동그린파크 아파트가 '96. 6. 30 준공된 후 '97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수입 321,838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97. 12. 31 입주자에게 반환하므로써 '97결산서상 321,838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음.</p>	<p>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p>
12	<p>○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96년부터 97년도 기간 중 용 및 용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p>	<p>□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p> <p>○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제정 1996. 1.18)의 제5조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기금의 규모, 운용 방법, 당해연도기금 사용 계획,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6년도에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으며,</p> <p>○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제6조 용자대상, 제8조 용자한도 및 이율 등을 개정('97. 1. 20 조례 제415호)하였으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의 지정, 용자금 취급, 용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 저소득 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7.10.30 조례를 개정함 (조례 462호)</p>	<p>사회복지과</p>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p>○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원인 용자금 회수 수입금 중 일반회계로 수입 처리된 91,000천원이 세입부족으로 1997년도 전입금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1998년도 예산에 반영됨.</p> <p>○의회 예산승인 후 1997년 12월말 조례 제5조(기금운용계획)에 의거 98년 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용자를 실시하게 됨.</p> <p>□'9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계획</p> <p>○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용자 지원함</p> <p>○ 용자계획 ————— 25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용자지원 : 8세대 120,000천원 ○ 하반기 용자지원 : 14세대 130,000천원 <p>○ 용자대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제6조 해당자 <p>○ 용자대상 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재산 50,000천원(공시지가)이하 ○ 월 1인 평균소득 350천원 이하인 대상 중 용자계획 기금 잔액 내에서 선정 <p>○ 용 자 한 도 : 1가구당 20,000천원</p> <p>○ 이 율 상 환 기 간 :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p> <p>○ 용자금 지급기관 : 구금고(광주은행)</p>	사회복지과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및 추 진 계 획	주관부서
		<p>□ 용자지원 실적</p> <p>○ 상반기 용자지원 : 8세대 1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 자 금 : 4세대 50,000천원 ○ 생 업 자 금 : 3세대 50,000천원 ○ 입주보증금 : 1세대 20,000천원 <p>○ 하반기 용자지원 : 10세대 9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 자 금 : 2세대 25,000천원 ○ 생 업 자 금 : 7세대 67,000천원 ○ 학 자 금 : 1세대 3,000천원 <p>○ 하반기 용자지원 추진중('98. 9.30 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세 대 : 35,000천원 	

<별첨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재영)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일반회계는 1996년도 예산보다 14,560,176천원 감소된 56,312,582천원으로, 특별회계는 2,178,072천원 감소된 13,802,29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연도 중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최종예산은 일반회계 70,537,507천원 특별회계 16,855,036천원이 되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0.47%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5.47%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최종예산의 규모는 87,392,543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0.62%가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재정규모

(단위 : 천원)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증감률
			당초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일반회계	60,735,989	70,872,758	56,312,582	9,316,313	1,586,181	3,322,431	70,537,507	△0.47
특별회계	8,429,105	15,980,369	13,802,297	2,766,838	4,240	281,661	16,855,036	5.47
합 계	69,165,094	86,853,127	70,114,879	12,083,151	1,590,421	3,604,092	87,392,543	0.62

*추경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보다는 증감된 액수를 나타냄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등으로 예산액의 115.6%인 81,574,818천원이 수납되어 예산상 세입을 12,977,691천원 초과하였고, 세출결산액은 64,760,126천원으로 16,814,691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11,154,263천원을 제외하면 순잉여금은 5,660,428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

(단위 : 천원)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발 생	세 입 결 산	68,385,770	77,395,640	81,574,817
	세 출 결 산	53,481,553	64,202,210	64,760,126
	세 계 잉 여 금	14,904,217	13,193,430	16,814,691
	이 월	7,386,491	10,223,273	11,154,263
순 잉 여 금		7,517,726	2,970,157	5,660,428
처 리	채 무 상 환	-	-	-
	익 년 도 추 경 재 원	3,077,963	470,157	3,660,428
	익 년 도 세 입 이 입	3,000,000	2,500,000	2,000,000
	기 타	1,439,763(이체금)	-	-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도 최근 경기동향과 세입전망 등을 고려하여 '98년의 추경 재원 또는 '98년의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결산>

○다음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462,401천원, 세출결산액은 4,447,887천원으로 17,014,51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16,326,121천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88,39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

(단위 : 천원)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발 생	세 입 결 산	8,577,819	15,743,520	21,462,401
	세 출 결 산	6,457,775	9,077,315	4,447,887
	세 계 잉 여 금	2,120,044	6,666,205	17,014,514
	이 월	701,921	5,627,049	16,326,121
순 잉 여 금		1,418,123	1,039,156	688,393
처 리	채 무 상 환	-	-	-
	익 년 도 추 경 재 원	1,116,520	737,392	141,963
	익 년 도 세 입 이 입	300,000	300,000	545,267
	기 타	1,603	1,764	1,163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도 최근 경기동향과 세입전망 등을 고려하여 '98년의 추경 재원 또는 '98년의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결산>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세출예산액의 9.43%에 해당하는 823,868천원을 계상하고 그 중 53,68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3,301천원은 연도 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과 재정운용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7년도 예산운용 전반에 관한 의견입니다.

1997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 것도 많으나, 적지 않은 사업에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사업소요 예측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중단·취소·이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설물증축 및 개보수사업 등 일부 주요사업에서조차 사전에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에 관한 예측과 전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차질로 인한 재원의 死藏은 물론 소중한 財源의 비효율적인 배분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면한 상황변동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단계에서는 배분된 재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一般會計 세수추계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1997년도 一般會計의 歲入決算을 보면 歲入豫算額은 70,537,507천원이었으나 실제 收納액은 81,574,818천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5.65%에 해당하는 11,037,311천원의 초과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1996년도의 9.2%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歲收超過收納額 11,037,311천원은 地方稅에서 508,065천원과 稅外收入에서 10,651,954천원이 초과수납된 것이며, 반면 보조금에서는 122,709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地方稅 초과수납액 508,065천원은 豫算額 70,537,507천원의 0.7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형상 전년도 6.03%에 비하면 오차폭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규모이나, 당해년도 세입초과분을 재원으로 追更豫算을 편성하였던 점을 감안하고 또한 세수추계가 예산규모나 주민의 조세부담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997년도 稅外收入 收納額은 24,131,443천원으로서 豫算額 13,479,489천원 보다 10,651,954천원이나 초과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비율이 79.02%나 됩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의 超過收納은 상당기간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대체로 세외수입에 대한 무관심과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 추계의 부정확성은 지방세수입 추계의 중요성과 같은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정이 요구되고,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서도 종류별 과거 수납실적과 다음년에 있을 특별한 요인의 사전 예측 등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초과수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예 산 액 (A)	12,856,187	15,167,201	13,479,489
수 납 액 (B)	20,249,754	22,049,776	24,131,443
초과수납액(C=B-A)	7,393,567	6,882,575	10,651,954
초과수납비율(C/A)	57.51%	45.38%	79.02%

셋째, 一般會計 未收納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997년도 一般會計 徵收決定額 83,515,198천원 중 收納額은 81,574,817천원이며, 收納되지 않은 액수는 징수결정액의 2.32%인 1,940,381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익년도 이월액은 1,903,242천원으로서 이는 징수결정액의 2.28%에 해당하며 '96년보다는 0.39% 증가한 것이며 최근 3년간 평균율은 2%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不納缺損額은 37,13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7년도에 비하여 0.07%감소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감소율 0.1%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의 사유는 주로 납세자의 무재력이나 거소불명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최근 조세행정의 과학화와 주민등록제도의 전산화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급히 시정되어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예 산 액		60,735,989	70,872,758	70,537,507	
징 수 결 정 액		69,559,450	78,975,678	83,515,198	
수 납 액		68,385,770	77,395,640	81,574,817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1,173,680 (1.69%)	1,580,038 (2.00%)	1,940,381 (2.32%)	
익 년 도 이 월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1,073,614 (1.54%)	1,489,844 (1.89%)	1,903,242 (2.28%)	
미 수 납 처 리	사 유 별	징 수 유 예		130,679	
		거 소 불 명	430,837	295,002	248,643
		무 재 산	245,113	181,143	100,781
		고질적 체납		250,056	745,13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397,664	632,963	808,688
불 납 결 손 액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100,066 (0.14%)	90,194 (0.11%)	37,139 (0.04%)	
사 유 별	무 재 산	24,429		2,749	
	거 소 불 명	57,377	35,548		
	시 효 완 성	18,260	54,646	34,390	

넷째, 歲出豫算의 집행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移用·移替 및 轉用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7년도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액은 67,449천원으로서 '96년 22,780천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편성과 執行段階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한 다소간의 탄력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집행시의 여건변화를 이유로 議會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변경시키는 조치는 비록 제도상 허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豫算審議權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용일자가 '97. 9. 10일이고 '97년도에는 세 차례의 추경(의회 승인일자 제1차 : '97. 6. 30., 제2차 : '97. 10. 13, 제3차 : '97. 12. 20.)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예산결과를 충분히 감안하고 예측되는 예산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適正水準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會計年度중에 豫算編成외의 사유로 지출을 결정하는 사례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이전용 현황

(단위 : 원)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移用등	轉用	移用등	轉用	移用등	轉用
移·轉用額 (豫算現額對比)	-	-		22,780,000 (0.03)		67,449,000 (0.08)
요인별	인건비 부족					1,049,000
	공공요금 부족					
	사업계획 변경			22,780,000		66,400,000
	급량비 부족					
	제세공과금 부족					
	기 타					

다음은 歲出豫算移越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歲出豫算移越金額은 一般會計가 豫算現額의 13.08%인 10,547,368천원, 特別會計가 72.62%인 16,325,720천원으로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합하면 전체 豫算現額의 26.06%에 해당하는 26,873,088천원이 연도 내에 執行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移越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의 최근 추세를 會計別로 보면 一般會計는 '95년 10.24%에서 '96년 12.98%, '97년 13.08%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액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特別會計는 '95년 8.33%, '96년 35.14%에 이어 '97년에는 72.62%로 연이어 대폭적인 증가율과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移越規模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設計變更, 用地買入遲延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지 않으나 그 보다는 주로 사업에 대한 적정공기의 면밀한 판단부족, 사업추진에 대한 세심한 검토부족 등 사전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이 처럼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급한 다른 부문의 投資를 지연시켜 財源配分을 왜곡시키게 되고, 또 이월에 따른 공기차질을 일시에 만회하려고 졸속·부실공사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移越事業의 상당부분이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설물증축 및 개보수 사업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차기 이월공사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移越分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편성함으로써 剩餘財源을 여타 긴요한 분야에 배정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개선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율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율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율
합계	7,604,544	75,824,299	10.03	15,723,467	93,788,141	16.76	26,873,088	103,116,332	26.06
일반회계	6,902,624	67,395,194	10.24	10,096,418	77,775,382	12.98	10,547,368	80,633,925	13.08
특별회계	701,920	8,429,105	8.33	5,627,049	16,012,759	35.14	16,325,720	22,482,407	72.62

*대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백분율을 말함

다음은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6.60%인 5,326,441천원이며, '96년의 경우(4.47%인 3,476,754천원)보다도 예산현액 대비율 2.13%가 증가하였고 절대액에서도 1,849,687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주로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각 소관부서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불용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에 기인하기 보다는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財源이 유희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발생을 고려하여 연말의 무더기 예산투입은 없어야 할 것이며, 不用額이 특별한 사유없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항목이나 이 항목 중 분기별 집행실적을 보았을 때 연도말에 집중되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삭감·조정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豫算編成시 적정을 기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년도별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취소	집행미사유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97	5,326,441	49,161	1,242,543	181,107	2,476,553	606,896	770,181
		0.92%	23.33%	3.40%	46.50%	11.39%	14.46%
'96	3,476,754	193,323	974,819	175,358	2,006,399	126,855	-
		5.56%	28.04%	5.04%	57.71%	3.65%	-
'95	7,038,160	137,460	1,483,829	1,718,305	3,214,698	483,868	-
		1.95%	21.08%	24.41%	45.68%	6.87%	-
'94	6,221,845	942,647	52,082	330,242	3,973,646	568,372	354,856
		15.15%	0.84%	5.31%	63.87%	9.14%	5.70%

다섯째, 세입세출결산 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로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타 特別會計의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 사업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되는 繼續費事業입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의 집행잔액은 계속비로서 익년도로 모두 이월시켜야 하나 일부금액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96년도에 실시한 1995년도 歲入歲出決算書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자체 내에서의 사전심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決算制度의 改善에 대한 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決算은 성격상 議會가 議決해준 예산이 그 目的과 限度額내에서 適法·妥當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집행부의 豫算執行責任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決算審査過程에서의 問題點이나 違法·不當事項등을 신년도 예산심사시에 反映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決算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는 決算書의 내용이 알기 쉽고 豫算과 事業이 連繫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행의 制度는 그 편제나 내용이 行政實務爲主의 個別 目單位의 計數中心으로 작성되어 있어 개별사업의 計劃과 實績, 豫算과 決算, 연도중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把握이 곤란하며, 결산관련서류 또한 그 內容의 把握과 검토에 長時日을 요하게 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은 최하 단위인 목 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연도 중의 여건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移·轉用과 不用의 要因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도 1개 課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蒐合業務에 매달리고 있어 회계제도의 개선이나 연도중의 違法·不當한 예산운용에 대한 是正 등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가 없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 관련서류의 작성은 가급적 사업중심의 科目單位로 심사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작성함으로써 예산과 事業의 집행내용이 동시에 파악될 수 있도록 그 體制와 內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마칩니다.